

연금저축손해보험
LIG계약이전연금보험(L14.01)



목 차

연금저축손해보험 LIG계약이전연금보험(L14.01)

- 적립형 -

◆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3
◆ 전국 고객지원 센터	4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5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7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11
◆ 가입자 유의사항	12
◆ 주요내용 요약서	16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18
◆ 보험용어 해설	19

연금저축손해보험 LIG계약이전연금보험(L14.01)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21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24
제3장 보험금의 지급	25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26
제5장 분쟁조정 등	27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9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29

부 칙(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30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lig.co.kr>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lig.co.kr>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 한국신용정보(주)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대한손보협회 정보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02)6900-2141~2	(02)3702-8679	(02)3145-71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준법감시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B/06층 기획조사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97 신용정보실(1팀)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콜센터[☎ 1544-01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객지원 센터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 ☎ 1544-0114 (지역번호 없이) (홈페이지: www.lig.co.kr)
●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 : 24시간 가능
● 대출상담 문의 평일 09:00 ~ 20:00 [토, 일, 공휴일제외]
● 계약조회, 변경, 해지, 기타상담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제외]

전 국 고 객 지 원 센 터

- 강북고객지원센터 02) 3149-7000
광주고객지원센터 062) 222-1114
대구고객지원센터 053) 669-7114
대전고객지원센터 042) 259-3000
본사고객지원센터 02) 6900-2552~3,5
부산고객지원센터 051) 600-2141
수원고객지원센터 031) 547-3800

동봉된 증권과 약관 외에도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으셨나요?

반드시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과 영수증을 교부받으셔야 하며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서명 날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흠페이지 : www.fss.or.kr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www.lig.co.kr)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 절차 >

- 당사 보험금청구서 양식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사고)내역 기재 및 자필서명을 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1544-0114**)에 요청하시면 팩스, e-mail 또는 우편으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가 당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실손의료비 손생보청구대행서비스 동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대표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처를 통해 제출합니다.



- 보내주신 청구서류에 대하여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고객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 서류접수처 >

- 대표팩스 접수 : 대표팩스번호 0505-136-6500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팩스접수증』을 고객님이 발송하신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접수 : www.lig.co.kr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 서류접수를 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파일첨부(JPG,TIFF) 또는 팩스로 전송해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금융회원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객센터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방문시 보험청구서(창구보관용)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제출확인증(보험금청구서 하단)을 절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청구서류안내

- 팩스
- e-mail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청구서류접수

- 팩스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확인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SMS 발송 추가 또는
지급안내문 발송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LIG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LIG 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배상

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당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의료비(벌금, 배상책임)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 2009. 10. 1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연대책임 조항이 신설 · 시행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최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받은 회사에서 다른 다수보험 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회사간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계약자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청구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LIG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www.LIG.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 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 LIG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회사 민원담당부서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LIG.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 1544-011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각종 병원 의무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사고

○ 공통 서류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의료비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 진단금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암 (제자리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암수술급여금:수술기록지 	진료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 재발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세포의 제거여부를 확인시에는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와 “수술기록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 와 “수술기록지” 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료병원
2대질병 치료비 (뇌/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진료병원
특정질병 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병원
기타진단금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진료병원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진료병원 동사무소

○ 신생아보장담보(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신생아 보장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증명서 입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 	-

○ 태아보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태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조기 출생한 경우) 	-

2. 상해사고

○ 공통 서류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사고증빙서류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산재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요양신청서(서28호) 산재요양급여 확인원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보험급여 원부 입퇴원확인서(30일 이상 입원시) 	근로복지공단 진료병원
폭행사고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기타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서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작성 초진기록지 	진료병원

○ 의료비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진료병원 동사무소

○ 후유장애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후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유장애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비장적출 수술건 X-RAY,CT,MRI 필름 및 판독지 	대학(종합) 병원 진료병원 진료병원

○ 기타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골절/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 수술시: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 	진료병원
응급비용	• 119구급(응급)이송확인서	관할 소방서
학원폭력/ 강력범죄 피해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경찰서 진료병원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에 확인 필요) 	진료병원

3. 교통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자동차보험 처리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	해당보험사
자동차보험 미처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입(통)원확인서(진단명 필수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 기록지)	경찰서 진료병원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후유장해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비장적출 수술건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대학(종합) 병원
	-	진료병원
	-	진료병원

○ 기타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운전면허 정지보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취소보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자동차사고 벌금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약식명령서 • 벌금영수증	경찰서 법원
교통사고 처리보장 (중상해 포함)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경찰서 법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경찰서 법원

4.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5항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제24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2항 및 3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4항에 의거 규정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27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됩니다.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 표준약관 제21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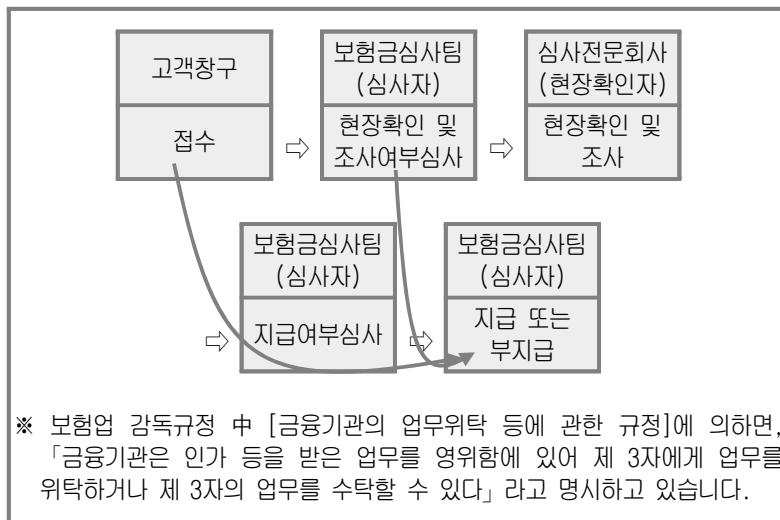
5. 주요 안내 내용

1.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2.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L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www.LIG.co.kr)
3.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로 각종정보(담당자 및 연락처, 제지급금 등)를 제공하여 드리고,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전자우편)

발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제지급금, 각종안내, 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LIG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 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표 전화 : 1544-0114)

6.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표준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반환기일 ^{주1)}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지급기일 ^{주2)}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표준이율 ^{주3)} 의 50% 1년 초과 1%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표준이율 ^{주3)}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 分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이내	표준이율 ^{주3)}
중도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보험 1년 이내 표준이율 ^{주3)} 의 50%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구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표준이율 ^{주3)} 의 50%	표준이율 ^{주3)}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1)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주2)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환급금 : 청구일부터 3영업일

주3)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적립이율은 “표준이율” 을 “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제외한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연금저축)

-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 \times 1.2$$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제전 연금계좌 기준과 신규계좌 기준 적용에 따른 세제 차이점

구분	'12.12.31 이전 가입자	'13.1.1 ~ '13.2.2 8 가입자	'13.3.1 이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없음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특별중도 해지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 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 신결의, 파산선고(종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유)	좌동	-
13.2% 분리과세 적용사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	-	천재지변, 해외이 주, 파산 또는 개 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 양기족의 3개월 이 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신결의, 파산선 고(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 산 또는 개인회생절 차 개시, 가입자 또 는 그 부양기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신결의, 파산선고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사유)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	연금소득 5.5%*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연금수령 기산연차	6년차	6년차	1년차
기산연차 적용방식	'13.2.15 이전 개시 자: 10년 납입,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 터 6년차 '13.2.15 이후 개시 자: 5년 납입,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 터 6년차	5년 납입, 나이 55세 요건을 충 족한 때부터 6년 차	5년 납입, 나이 55세 요건을 충 족한 때부터 1년차

* 종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 (나이별로 5.5~3.3% 적용 안함)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산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CI 관련 보장

- CI관련보장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교통상해 관련 담보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다.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해당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합니다.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담보

-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 등 총 4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일의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재가입

-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이며, 회사는 계약체결시 재가입 조건을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 당시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인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심사절차에 따라 인수거절시에는 재가입 직전의 가입조건(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례보상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자기부담금 공제

-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10%, 2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

부당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제외, 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계약취소

계약자 청약한 경우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무효(재물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계약의 소멸

7-1) 계약의 소멸(화재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7-2) 계약의 소멸(화재실손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 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11.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 1)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자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2. 보험금의 지급(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3. 보험금의 지급(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4. 보험금의 지급(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계약 보험료중 다음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 안내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구 분	목 적	시기	비용	
보험관 계비용	계약 체결 비용	판매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유지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3.5% (7,000원) 납입기간이후 거치기간중 책임준비금에서 2,500원	
연금수 령기간 중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2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해지공제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7년이내	7년초과 10년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승낙일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

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2. 보험료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 거치형 계약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연금액 및 환급금

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연금액 및 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암류, 가암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암류, 가암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1)})} \times 1.2$$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현재 ·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계산 후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합니다.
(보험나이 계산예시)
- 39년 7개월에 가입시 가입시점의 보험나이는 40세, 만 나이는 39세임

제9조(특별계정의 운용)

-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 (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0조(보험료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보험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 및 한도)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성립일 이후부터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이체전 계약의 당해연도 납입액 포함)는 월납 150만원, 3개월납 45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 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5조(연금의 지급)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이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므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및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이라 하며, 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2.7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 보증)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 ② 제1항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 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제17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15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9조(소멸시효)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0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5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22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 + 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

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분쟁조정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자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해당 특별약관 및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부 칙 -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함)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 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하 "연금외수령"이라 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계약자의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연금저축손해보험 LIG계약이전연금보험(L14.01)

- 거치형 -

◆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33
◆ 전국 고객지원 센터	34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35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37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41
◆ 가입자 유의사항	42
◆ 주요내용 요약서	46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48
◆ 보험용어 해설	49

연금저축손해보험 LIG계약이전연금보험(L14.01)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51
제2장 보험금의 지급	54
제3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55
제4장 분쟁조정 등	56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58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58

부 칙(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59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lig.co.kr>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lig.co.kr>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 한국신용정보(주)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대한손보협회 정보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02)6900-2141~2	(02)3702-8679	(02)3145-71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준법감시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B/06층 기획조사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97 신용정보실(1팀)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콜센터[☎ 1544-01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객지원 센터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 ☎ 1544-0114 (지역번호 없이) (홈페이지: www.lig.co.kr)
-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 : 24시간 가능
 - 대출상담 문의 평일 09:00 ~ 20:00 [토, 일, 공휴일제외]
 - 계약조회, 변경, 해지, 기타상담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제외]

전 국 고 객 지 원 센 터

- 강북고객지원센터 02) 3149-7000
광주고객지원센터 062) 222-1114
대구고객지원센터 053) 669-7114
대전고객지원센터 042) 259-3000
본사고객지원센터 02) 6900-2552~3,5
부산고객지원센터 051) 600-2141
수원고객지원센터 031) 547-3800

동봉된 증권과 약관 외에도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으셨나요?

반드시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과 영수증을 교부받으셔야 하며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서명 날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흠페이지 : www.fss.or.kr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www.lig.co.kr)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 절차 >

- 당사 보험금청구서 양식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사고)내역 기재 및 자필서명을 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1544-0114**)에 요청하시면 팩스, e-mail 또는 우편으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가 당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실손의료비 손생보청구대행서비스 동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대표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처를 통해 제출합니다.



- 보내주신 청구서류에 대하여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고객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 서류접수처 >

- 대표팩스 접수 : 대표팩스번호 0505-136-6500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팩스접수증』을 고객님이 발송하신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접수 : www.lig.co.kr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 서류접수를 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파일첨부(JPG,TIFF) 또는 팩스로 전송해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금융회원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객센터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방문시 보험청구서(창구보관용)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제출확인증(보험금청구서 하단)을 절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청구서류안내

- 팩스
- e-mail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청구서류접수

- 팩스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확인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SMS 발송 추가 또는
지급안내문 발송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LIG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LIG 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배상

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당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의료비(벌금, 배상책임)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 2009. 10. 1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연대책임 조항이 신설 · 시행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최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받은 회사에서 다른 다수보험 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회사간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계약자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청구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LIG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www.LIG.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 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 LIG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회사 민원담당부서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LIG.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 1544-011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각종 병원 의무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사고

○ 공통 서류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의료비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 진단금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암 (제자리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암수술급여금:수술기록지 	진료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 재발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세포의 제거여부를 확인시에는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와 “수술기록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 와 “수술기록지” 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료병원
2대질병 치료비 (뇌/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진료병원
특정질병 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병원
기타진단금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진료병원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진료병원 동사무소

○ 신생아보장담보(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신생아 보장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증명서 입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 	-

○ 태아보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태아보험	•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조기 출생한 경우)	-

2. 상해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사고증빙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산재사고	• 산재요양신청서(서28호) • 산재요양급여 확인원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 보험급여 원부 • 입퇴원확인서(30일 이상 입원시)	근로복지공단 진료병원
폭행사고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기타사고	• 청구서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작성 • 초진기록지	진료병원

○ 의료비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입원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통원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진료병원 동사무소

○ 후유장애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후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유장애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비장적출 수술건 • X-RAY,CT,MRI 필름 및 판독지 	대학(종합) 병원 진료병원 진료병원

○ 기타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골절/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 • 수술시: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 	진료병원
응급비용	• 119구급(응급)이송확인서	관할 소방서
학원폭력/ 강력범죄 피해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진단서 	경찰서 진료병원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에 확인 필요) 	진료병원

3. 교통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자동차보험 처리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	해당보험사
자동차보험 미처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입(통)원확인서(진단명 필수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 기록지)	경찰서 진료병원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후유장해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비장적출 수술건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대학(종합) 병원
	-	진료병원
	-	진료병원

○ 기타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운전면허 정지보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취소보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자동차사고 벌금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약식명령서 • 벌금영수증	경찰서 법원
교통사고 처리보장 (중상해 포함)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경찰서 법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경찰서 법원

4.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5항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제24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2항 및 3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4항에 의거 규정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27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됩니다.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 표준약관 제21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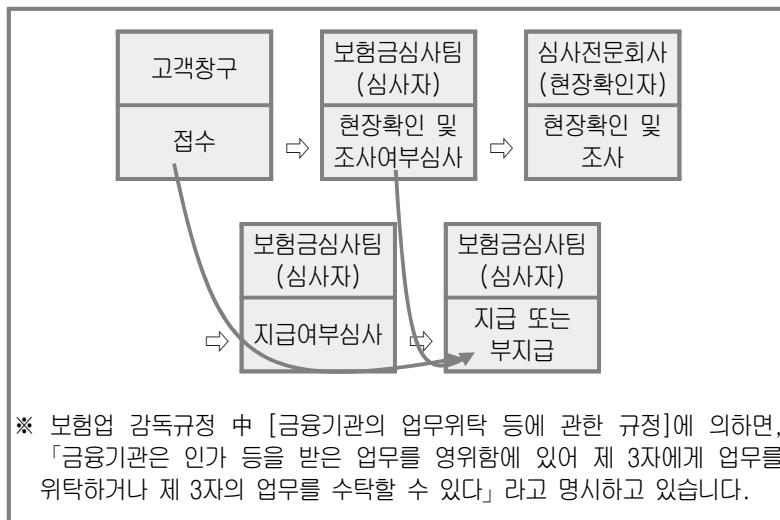
5. 주요 안내 내용

1.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2.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L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www.LIG.co.kr)
3.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로 각종정보(담당자 및 연락처, 제지급금 등)를 제공하여 드리고,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전자우편)

발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제지급금, 각종안내, 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LIG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 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표 전화 : 1544-0114)

6.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표준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반환기일 ^{주1)}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지급기일 ^{주2)}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표준이율 ^{주3)} 의 50% 1년 초과 1%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표준이율 ^{주3)}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 分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이내	표준이율 ^{주3)}
중도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보험 1년 이내 표준이율 ^{주3)} 의 50%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구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1년이내 표준이율 ^{주3)} 의 50%	표준이율 ^{주3)}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 1%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1)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주2)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환급금 : 청구일부터 3영업일

주3)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적립이율은 “표준이율” 을 “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제외한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연금저축)

-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 \times 1.2$$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제전 연금계좌 기준과 신규계좌 기준 적용에 따른 세제 차이점

구분	'12.12.31 이전 가입자	'13.1.1~'13.2. 28 가입자	'13.3.1 이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없음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특별중도 해지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 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 신결의, 파산선고(종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유)	좌동	-
13.2% 분리과세 적용사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	-	천재지변, 해외이 주, 파산 또는 개 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 양기족의 3개월 이 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신결의, 파산선 고(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 산 또는 개인회생절 차 개시, 가입자 또 는 그 부양기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신결의, 파산선고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사유)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	연금소득 5.5%*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연금수령 기산연차	6년차	6년차	1년차
기산연차 적용방식	'13.2.15 이전 개시 자: 10년 납입,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 터 6년차 '13.2.15 이후 개시 자: 5년 납입,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 터 6년차	5년 납입, 나이 55세 요건을 충 족한 때부터 6년 차	5년 납입, 나이 55세 요건을 충족 한 때부터 1년차

* 종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 (나이별로 5.5~3.3% 적용 안함)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산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CI 관련 보장

- CI관련보장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교통상해 관련 담보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다.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해당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합니다.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담보

-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 등 총 4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일의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재가입

-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이며, 회사는 계약체결시 재가입 조건을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 당시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인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심사절차에 따라 인수거절시에는 재가입 직전의 가입조건(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례보상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자기부담금 공제

-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10%, 2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

부당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제외, 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계약취소

계약자 청약한 경우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무효(재물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계약의 소멸

7-1) 계약의 소멸(화재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7-2) 계약의 소멸(화재실손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 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11.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 1)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치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2. 보험금의 지급(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3. 보험금의 지급(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4. 보험금의 지급(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계약 보험료중 다음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 안내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구 분	목 적	시기	비용
보험관 계비용	계약 체결 비용	판매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유지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3.5% (7,000원)
			납입기간이후 거치기간중 책임준비금에서 2,500원
연금수 령기간 중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2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해지공제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7년이내	7년초과 10년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승낙일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

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정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2.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계약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

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1)})} \times 1.2$$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현재 ·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 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 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 (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2장 보험금의 지급

제10조(연금의 지급)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이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므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및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이라 하며, 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2.7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 보증)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 합니다.
- ② 제1항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3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10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4조(소멸시효)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3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15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0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17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 + 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알린 경우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1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19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

니다.

제4장 분쟁조정 등

제2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해당 특별약관 및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부 칙 -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함)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 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하 "연금외수령"이라 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계약자의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연금저축손해보험 LIG계약이전연금보험(L14.01)

- 즉시형 -

◆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63
◆ 전국 고객지원 센터	64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65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67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71
◆ 가입자 유의사항	72
◆ 주요내용 요약서	76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78
◆ 보험용어 해설	79

연금저축손해보험 LIG계약이전연금보험(L14.01)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81
제2장 보험금의 지급	84
제3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85
제4장 분쟁조정 등	86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87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87

부 칙(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88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lig.co.kr>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lig.co.kr>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T워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 한국신용정보(주)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대한손보협회 정보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02)6900-2141~2	(02)3702-8679	(02)3145-71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준법감시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B/06층 기획조사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97 신용정보실(1팀)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콜센터[☎ 1544-01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객지원 센터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 ☎ 1544-0114 (지역번호 없이) (홈페이지: www.lig.co.kr)
-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 : 24시간 가능
 - 대출상담 문의 평일 09:00 ~ 20:00 [토, 일, 공휴일제외]
 - 계약조회, 변경, 해지, 기타상담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제외]

전 국 고 객 지 원 센 터

- 강북고객지원센터 02) 3149-7000
광주고객지원센터 062) 222-1114
대구고객지원센터 053) 669-7114
대전고객지원센터 042) 259-3000
본사고객지원센터 02) 6900-2552~3,5
부산고객지원센터 051) 600-2141
수원고객지원센터 031) 547-3800

동봉된 증권과 약관 외에도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으셨나요?

반드시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과 영수증을 교부받으셔야 하며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서명 날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훌페이지 : www.fss.or.kr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www.lig.co.kr)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 절차 >

- 당사 보험금청구서 양식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사고)내역 기재 및 자필서명을 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1544-0114**)에 요청하시면 팩스, e-mail 또는 우편으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가 당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실손의료비 손생보청구대행서비스 동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대표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처를 통해 제출합니다.



- 보내주신 청구서류에 대하여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고객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 서류접수처 >

- 대표팩스 접수 : 대표팩스번호 0505-136-6500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팩스접수증』을 고객님이 발송하신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접수 : www.lig.co.kr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 서류접수를 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파일첨부(JPG,TIFF) 또는 팩스로 전송해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금융회원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객센터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방문시 보험청구서(창구보관용)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제출확인증(보험금청구서 하단)을 절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청구서류안내

- 팩스
- e-mail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청구서류접수

- 팩스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확인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SMS 발송 추가 또는
지급안내문 발송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LIG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LIG 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배상

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당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의료비(벌금, 배상책임)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 2009. 10. 1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연대책임 조항이 신설 · 시행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최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받은 회사에서 다른 다수보험 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회사간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계약자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청구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LIG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www.LIG.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 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 LIG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회사 민원담당부서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LIG.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 1544-011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각종 병원 의무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사고

○ 공통 서류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의료비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 진단금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암 (제자리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암수술급여금:수술기록지 	진료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 재발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세포의 제거여부를 확인시에는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와 “수술기록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 와 “수술기록지” 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료병원
2대질병 치료비 (뇌/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진료병원
특정질병 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병원
기타진단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진료병원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진료병원 동사무소

○ 신생아보장담보(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신생아 보장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증명서 입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 	-

○ 태아보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태아보험	•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조기 출생한 경우)	-

2. 상해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사고증빙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산재사고	• 산재요양신청서(서28호) • 산재요양급여 확인원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 보험급여 원부 • 입퇴원확인서(30일 이상 입원시)	근로복지공단 진료병원
폭행사고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기타사고	• 청구서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작성 • 초진기록지	진료병원

○ 의료비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입원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통원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진료병원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진료병원 동사무소

○ 후유장애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후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유장애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비장적출 수술건 • X-RAY,CT,MRI 필름 및 판독지 	대학(종합) 병원 진료병원 진료병원

○ 기타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골절/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 • 수술시: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 	진료병원
응급비용	• 119구급(응급)이송확인서	관할 소방서
학원폭력/ 강력범죄 피해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진단서 	경찰서 진료병원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에 확인 필요) 	진료병원

3. 교통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당사 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자동차보험 처리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	해당보험사
자동차보험 미처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입(통)원확인서(진단명 필수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 기록지)	경찰서 진료병원

○ 사망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후유장해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비장적출 수술건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대학(종합) 병원
	-	진료병원
	-	진료병원

○ 기타

구 分	구비서류	발급처
운전면허 정지보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취소보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자동차사고 벌금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약식명령서 • 벌금영수증	경찰서 법원
교통사고 처리보장 (중상해 포함)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경찰서 법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경찰서 법원

4.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5항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제24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2항 및 3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표준약관 제32조(보험금의 지급) 4항에 의거 규정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27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됩니다.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 표준약관 제21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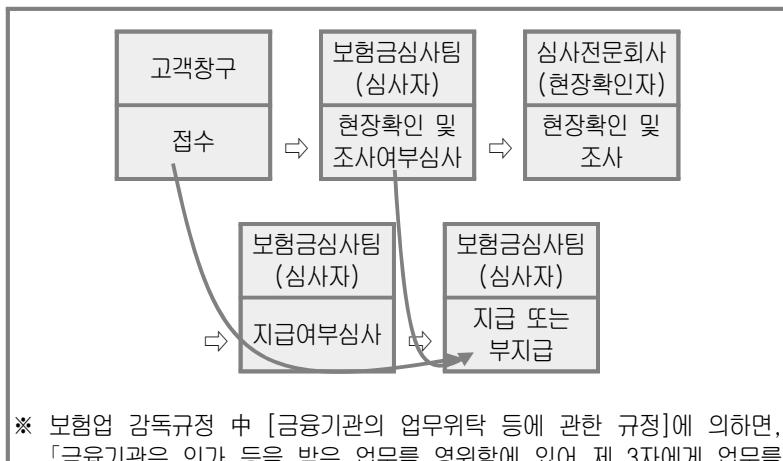
5. 주요 안내 내용

1.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2.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L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www.LIG.co.kr)
3.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로 각종정보(담당자 및 연락처, 제지급금 등)를 제공하여 드리고,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전자우편)

발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제지급금, 각종안내, 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LIG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 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표 전화 : 1544-0114)

6.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표준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반환기일 ^{주1)}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지급기일 ^{주2)}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만기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표준이율 ^{주3)}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 分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이내	표준이율 ^{주3)}
중도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보험 1년 이내 표준이율 ^{주3)} 의 50%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구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1년이내 표준이율 ^{주3)} 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 1%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주3)}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1)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주2)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환급금 : 청구일부터 3영업일

주3)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적립이율은 “표준이율” 을 “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제외한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연금저축)

-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 \times 1.2$$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제전 연금계좌 기준과 신규계좌 기준 적용에 따른 세제 차이점

구분	'12.12.31 이전 가입자	'13.1.1~'13.2.28 가입자	'13.3.1 이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없음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특별중도 해지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 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 신결의, 파산선고(종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유)	좌동	-
13.2% 분리과세 적용사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	-	천재지변, 해외이 주, 파산 또는 개 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 양기족의 3개월 이 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신결의, 파산선 고(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 산 또는 개인회생절 차 개시, 가입자 또 는 그 부양기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 지, 안허가 취소, 해신결의, 파산선고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사유)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	연금소득 5.5%*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연금수령 기산연차	6년차	6년차	1년차
기산연차 적용방식	'13.2.14 이전 연금 수령 개시자: 10년 가입, 만 55세 요건 을 충족한 때부터 6 년차 '13.2.15 이후 연금 수령 개시자: 5년 가 입, 만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6년차	5년 가입, 만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 부터 6년차	5년 가입, 만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 터 1년차

* 종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 (나이별로 5.5~3.3% 적용 안함)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산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CI 관련 보장

- CI관련보장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교통상해 관련 담보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다.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해당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합니다.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담보

-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 등 총 4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일의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재가입

-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이며, 회사는 계약체결시 재가입 조건을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 당시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인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심사절차에 따라 인수거절시에는 재가입 직전의 가입조건(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례보상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자기부담금 공제

-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10%, 2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

부당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제외, 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계약취소

계약자 청약한 경우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무효(재물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계약의 소멸

7-1) 계약의 소멸(화재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7-2) 계약의 소멸(화재실손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 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11.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 1)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치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2. 보험금의 지급(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3. 보험금의 지급(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4. 보험금의 지급(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계약 보험료중 다음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 안내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구 분	목 적	시기	비용
보험관 계비용	계약 체결 비용	판매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유지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3.5% (7,000원)
			납입기간이후 거치기간중 책임준비금에서 2,500원
연금수 령기간 중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2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해지공제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7년이내	7년초과 10년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승낙일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

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1)})} \times 1.2$$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현재 ·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7조(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 (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2장 보험금의 지급

제9조(연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금 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을 연금지급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이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므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및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이라 하며, 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2.7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 보증)로 하

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제11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연금저축-1304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2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9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3조(소멸시효)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14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9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16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 + 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1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18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분쟁조정 등

제1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해당 특별약관 및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부 칙 -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함)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 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하 "연금외수령"이라 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계약자의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LIG타워
고객콜센터 1544-0114